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5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윤기섭,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희원, 최민규, 최진혁,
홍국표, 황유정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대규모 체육문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다수의 경기·공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마땅한 개선대책이 없는 상황임.
-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5조의3제1항 신설)
- 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15조의3제2항 및 별표 7 신설)
- 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시장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제15조의3제2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분의 10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차량	
3.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4.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련 차량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5.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또는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유효기간 내에만 면제)	
6.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100분의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6·18 자유상이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1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15. 서울특별시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100분의 20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8.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9.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20. 그 밖에 체육시설 입주업체 종사자 차량 등 시장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시장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p> <p><u>② 시장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제2항 및 [별표7]
- 대규모 체육문화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제2항	○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본 안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따른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현재 감면 대상자¹⁾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에 대한 용역²⁾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사가 완료될 시 비로소 합리적으로 금액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1) 본 안 [별표7]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제15조의3제2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19.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20. 그 밖에 체육시설 입주업체 종사자 차량 등 시장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 추진계획(체육정책과-3155)

- 용역기간 : 2024. 3월~9월(6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